
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 -

## 검토 의견서

1. 발의연월일: 2022. . .

2. 발의자: 김장관 의원(대표발의)

### 3. 제안이유

-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재난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.

### 4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의 목적,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, 안 제2조)
- 활동의 지원범위와 지원절차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3조, 안 제4조)
- 중복지원 금지 및 보고·검사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, 안 제6조)
-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방법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7조)
- 포상 및 준용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8조, 안 제 9조)

### 5. 참고사항(관계법령)

- 관계법령
  -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7조(임무), 제16조(활동비 지원)
  -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3조(임무)
- 비용추계: 미첨부 대상

## 6. 검토의견

- 해당 의원발의 조례안은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의 활동 지원으로 의용소방대원의 재난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,
- 입법의 필요성, 상위법령 저촉 또는 중복 여부, 과도한 재정 또는 행정력 부담 여부 및 법체계 등을 검토한 결과,
- 이 조례안의 목적(조례 안 제1조), 정의(조례 안 제2조), 지원범위(조례 안 제3조)는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서 규정하고 있고, 보조금 지원절차 등(조례 안 제4조, 제5조, 제6조, 제7조)은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재정법」, 「지방보조금관리기준」에서 규정하는 등, 이 조례안이 상위법령과 충복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사료되므로 입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.